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 대상 및 제외 대상 화학물질(환경부 고시 제**2021-62**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사대상 화학물질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혼합물을 포함한다)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과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② 조사제외 화학물질

조사 제외 화학물질은 ①제외 대상 및 ②연간 기준 수량미만(업종에 따라 다름)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① (제외 대상 화학물질)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다만,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임)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② **(기준수량미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대분류 중 대분류에 의한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은 조사 제외입니다.

단, C (제조업), D(전기,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E(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연간 사용(취급)량에 관계없이 통계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

업종 구분	일반화학물질(kg)	유해화학물질(kg)
A. 농업, 임업 및 어업	1,000	100
B. 광업	1,000	100
C. 제조업	-	-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F. 건설업	1,000	100
G. 도매 및 소매업	1,000	100
H. 운수 및 창고업	1,000	100
I. 숙박 및 음식점업	1,000	100
J. 정보통신업	1,000	100
K. 금융 및 보험업	1,000	100
L. 부동산업	1,000	100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0	10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00	10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00	100
P. 교육서비스	1,000	10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	10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0	10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	100

아래 내용은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지침서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원료로 점토와 납석, 장석, 석회석 등을 사용하는데 흙이나 돌뿐만 아니라 석탄, 무연탄 등 광물도 조사대상 인가요?

- 흙, 돌, 광물 등 그 자체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나,
-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여 화학적인 변형 및 추출·반응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여 취급하는 경우라면 조사대상입니다.

Q 철강회사에서 나오는 제강분진도 조사대상 물질인가요?

- 제강분진이 폐기물로 처리된다면 조사제외대상이지만,
- 폐기물을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Q 폐비닐을 이용하여 고체원료인 폴리에틸렌을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건가요?

- 폐비닐로부터 폴리에틸렌을 분리, 정제하여 생산하므로 조사대상입니다. 또한, 폴리에틸렌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첨가제, 공정정보조물질 등도 조사대상입니다.
- 단, 폐기물인 폐비닐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폐유 등 폐기물도 조사대상 화학물질에 해당 하나요?

- 폐기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폐수처리장의 pH 조절제 등 폐수처리약품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대상입니다.

Q 철광석과 석회석 등을 소결하여 중간체(소결광)를 만들어 전량 주철을 제조하는 경우, 중간체(소결광)인 화학물질도 조사대상인가요?

- 원료로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원재료)과 최종 생산된 제품(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경우 조사대상이 아닙니다